

| 인원 자료실 | | |
|--------|-----|------|
| 등록일 | 유기호 | 사르번호 |
| | B8 | 189 |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진출 보장!

양심수 군문제해결을 위한 모임

POC.f.4

전 체 목 차

Part 1.

현 병역법 시행령개정의 근거와 해결방향

1. 현 병역법 시행령 136조가 개정되어야 하는 3가지 이유
2. 과거 양심수에 대한 군문제해결 선례
3. 군문제 해결방안
4. 병무청의 반대근거에 대한 양군모의 입장

Part 2.

양군모 회원현황 및 징집영장 반납투쟁

: 400여명의 시국관련 양심수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1. 김영삼 정부하 양심수 출신의 양군모 회원현황
2. 징집영장 반납투쟁 및 부당강제징집거부 연서투쟁

Part 3.

군대내 시국관련 양심수의 인권현황

: 인권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군대

1. 김영삼 정부하 군내의 시국관련 구속자 현황
2. 구속자가 고발하는 인권현황
3. 군복무자가 증언하는 군내의 인권현황

Part 4

시국관련 양심수들의 정상적 사회복귀 보장을 촉구하는
교수 및 민주사회단체 대표자 탄원서명

1. 민주사회단체 대표자 탄원서명
2. 대학교수 탄원서명

Part 5

94년도 시국관련 양심수의 군문제 해결 자료모음
: 과거 권위주의적인 김영삼정부하에서도
시국관련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보장했다!

Part 1

헌 병역법 시행령 개정의 근거와 해결방향

- 법이 절대불변의 기준이 될 때 법은 또다른 폭력이 된다!
- 양심수의 군문제 해결은 단순한 법의 잣대가 아니라 인권의 잣대로 봐야 한다!
- 군문제 해결을 통한 정상적 사회진출 보장은
기본적으로 삶과 생존권적 차원의 문제이다!
- 시국관련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참여보장은 가장 중요한 인권의 문제이다!

1. 헌 병역법 시행령 136조가 개정되어야 하는 3가지 이유
2. 과거 양심수에 대한 군문제해결 선례
3. 군문제 해결방향
4. 병무청의 반대에 대한 양군모의 입장

1. 현 병역법 시행령 136조가 개정되어야 하는 3가지 이유

1. **현 병역법 시행령 136조는 청산되지 못한 반개혁적, 반민주적인 대표적 악법이다.** 왜냐하면 이 136조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89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그 기본틀이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 **이 조항은 양심수의 정상적 사회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반인권적 악법이다.** 양심수의 군문제 해결을 통한 정상적 사회진출 보장은 과거 모든 정권에서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의 일환으로서 전향적으로 검토되어 실시되어온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즉 과거 군사정권 및 김영삼 정부하에서도 「양심수 석방 - 정치수배 해제 - 군문제 해결」이라는 3가지 문제가 일괄처리됨으로써, 양심수의 실질적인 정상적 사회진출 보장이 범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3. **제 136조는 현 정부의 개혁정책과 인권중시 정책과 정면으로 반하는 반정부적 악법이다.** 현 정부의 인권중시 정책은 인권보장을 통해 국민 각자가 정당한 사회인으로서,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는데, 현 병역법 시행령 136조는 특히 양심수들에게 정당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시국관련 수형자의 정상적 사회진출 보장을 위한 현 병역법 시행령 136조 개정의 근거

1. 현 정부는 민주개혁과 사회개혁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사안인 양심수 문제에 대한 전향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이러한 현 정부의 노력은 양심수의 문제를 「정치적 차원」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기에 가능했으며, 이는 과거 정권하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정치적 희생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치유의지의 발현이자 노력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3. 그러나 양심수 석방으로 양심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현행 병역법 시행령 136조의 적용으로 인해, 양심수 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출소 후 다시 군입대 해야 함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복귀 자체가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양심수 석방 조치는 근본적으로 양심수들에게 정상적 사회진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기본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병역법 시행령 136조는 그 기본정신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4. 시국관련 청년양심수들에 대한 장기적 사회격리는 우리사회의 민주발전과 화합에 역행하는 것이다.
현 병역법에 의하면 2년미만의 수형생활을 한 양심수가 제 1국민역에 편입될 경우, 도합 4-5년의 사회적 격리를 경험해야 한다. 이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해서 개인의 정상적인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것이며, 감옥과 군대로 이어지는 사회참여의 배제는 우리사회의 민주적 발전방향과 걸맞지 않다. 이는 50년만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형성되어온 민주주의와 개혁에 대한 사회적 열망과도 부합되지 않는 일이다.
5. 이제까지 시국관련 수형자에 대한 병무행정은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일관성있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시기마다 쉽게 개정되어 청년양심수들의 장기적 사회격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근거 1.

병역법 시행령 초기세칙은 76년 긴급조치 발효직후, 80년 초, 84년 유화국면, 88년 여소야대 정국초기, 94년 문민정권 개혁정국, 96년 연대사건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마다 쉽게 개정되어 왔다.

2.

사회적 이중고통인 시국관련 수형자들의 부당징집 폐지의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역대 정권은 80년, 84년, 88년, 94년초 등 네차례에 걸쳐 당시의 시행령, 시행세칙을 개정 또는 소급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뒷면 과거 양심수에 대한 군문제 해결선례 참조〉

6. 현 병역법 시행령은 집행유예자를 포함해 2년미만의 수형자에 대한 법적-인적 보호장치가 부재하다. 이로 인해 시국관련 학생출신들의 장기적 사회격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정상적 사회진출의 길 자체가 봉쇄되어 있다.

근거 1.

현 병역법 시행령 136조에 의하면, 2년 이상의 수형자에 한해서만 병역을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1년 6개월의 수형자의 경우는 1년 6개월의 수형생활과 28개월의 군복무를 해야함으로서 사실상 약 4년 동안의 사회적 격리가 불가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실제적으로 2년 이상의 수형자보다 더 심한 현실적 고통을 받고 있다.

2.

또한 현 병역법 시행령 136조는 집행유예자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전무하다. 그러나 실제로 시국관련 재판과정에서 실행자와 집행유예자의 차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로 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수배기간-구속기간 등의 사회적 격리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출소 후 자격정지 및 집행유예 기간의 사회활동의 제한, 그리고 군복무으로 이어짐으로서 이들 역시 정상적 사회진출에 있어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3.

특히 26-28세에 이른 양심수들이 제 1국민역에 복무한 후 사회에 나오게 되면 28-30세에 이르게 되는데, 이 나이에 정상적인 직장을 얻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개개인의 사회적 기본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며,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미 일정한 책

임을 진 사람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새 정부의 출범에 걸맞는 포용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7. 현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를 입영대상자가 처한 조건과 처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복무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개병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함으로서 나라의 주권주체로서 권리와 역할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현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를 제 1국민역과 제 2국민역으로 구분하고 있고, 다시 병역면제를 따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개개인의 사회적 처지와 조건이다. 이렇게 병역의무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는 이유는 국민 모두가 처지와 조건에 맞게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의 정상적인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탄력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이다. 즉 처지와 조건에 따른 탄력적 병역의무와 형평성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다. 제 2국민역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실직가족, 육체적 사유로 남들에 비해 사회적인 불리에 처한 사람, 고아, 혼혈아, 2년 이상의 수형생활자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요구는 법과 제도의 관례를 벗어난 부정을 통한 불법적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병역의무를 개개인의 사회적 처지와 조건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현 병역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기회를 호소하는 것이다. 이리하기에 저희들의 요구는 특혜나 특별대우의 요구나, 부당한 방법에 의한 병역기피와는 성질이 전혀 다른 차원이다.

10.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시국관련 양심수 출신들의 정상적 사회복귀 보장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군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 역시 이러한 「양심수 문제의 해결」이라는 큰틀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결국 시국관련 양심수들의 「군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는 단지 법리적, 행정적 차원에서 바라볼 문제는 아니며, 과거정부에서도 불행했던 역사에 대한 개혁과 과거청산 차원에서 이미 4차례에 걸쳐 정권초기에 「양심수 석방-정치수배 해제-군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복귀 보장」이라는 3가지 문제를 일괄처리 해온 선례가 있다.

11. 물론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시국관련 양심수들이 수배-구속-수형생활로 인해 과거행위에 대한 처벌을 이미 받았고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이미 입영적령기를 넘어버리는 등 정상적인 일반대학생에 비해 극히 비정상적인 처지에 놓여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의 문제해결을 단지 특혜차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조건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

12. 시국관련 양심수들의 과거행위가 비록 일정부분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위가 과거 불안정했던 정치적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정상적 사회복귀를 보장함으로써 이들이 경제회생과 민주사회개혁이라는 제 2전국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게 하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과 부합하다고 본다.

| | | | |
|------------|--|---|--|
| | 89. 3. 25. 개정 | 94년 10월 6일 개정 | 97. 5. 27 개정 |
| 병역법 시행령 | 제 103조(수형자 등의 보충역 편입) ①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2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다만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람은 제외) 2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조치내용 <삭제> | 제 136조 (수형자 등의 제 2국민역 편입) ①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동 일 2. 1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중 27세이상의 사람으로서 대학의 4년이하의 과정(의과·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경우에는 본과 2년이하의 과정을 말한다)에 재학하거나 이를 수료 또는 졸업한 사람 및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 <신설> | 제 136조(수형자 등의 제 2국민역 편입) ①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 1. 보충역 편입대상은 1년이상 2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집행유예자는 제외) <신설> 2. 제 2국민역 편입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 2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다만 집행유예자는 제외) --> 94년의 규정 삭제 |
| | | | |
| 개정 이유 | 2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특례조치내용 <삭제> | 수형자의 입영에 따른 군사고를 예방하고 지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 1년이상 2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집행유예자 제외)을 '보충역편입함'으로써 군에서의 사고 등을 미리 방지하고 현역병의 자질향상을 꾀함 <습 제 136조제1항 변경> |

2. 과거 양심수에 대한 군문제해결 선택

| | 시행연도 | 소급적용시기 | 소집면제 보충역 편입자 |
|-----|--------|------------------------|--------------|
| 1 차 | 80년 | 76. 7. 10 - 79. 12. 31 | 400여명 |
| 2 차 | 84년 3월 | 80. 5. 17 - 84. 3 | 400여명 |
| 3 차 | 88년 | 84. 5. 25 - 88. 7. 30 | 447명 |
| 4 차 | 94년 | 88. 8. 1 - 92. 2. 24 | 540여명 |

3. 군문제 해결방향

1) 주요골자

- 93년 2월 25일부터 98년 2월 24일까지 법무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수(국가보안법, 집시법위반, 폭력, 화염병사용 처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로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만 25세 이상인 시국관련자는 제 2국민역 편입
- 형기 합산 2년 이상인자에 대하여 제2국민역 편입
- 동기간에 같은 이유로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만 25세 미만인 자는 보충역 편입

3. 근거

가. 대상자 설정과 근거

- 과거 정권에 대한 올바른 청산의 의미에서 김영삼 정권 시기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억압과 피해를 받았던 시국관련 청년학생들 모두를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 설정근거로는 현 법무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심수(박상천 법무부장관의 기자회견에 준하여)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설정하였다.
- 보충역 편입 및 제 2국민역 편입의 요구는 이들 시국관련자들의 정상적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보충역 편입을 주장하는 것은 시국관련 학생들이 현역대상자로 입영하는 경우, 사회의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군내에서 조직사건과 군기무사로부터 감시 및 사찰등 특별관리로 인해 인권침해 및 인신구속으로 2중의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차별적인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나. 제 2국민역 편입 대상자와 이의 근거

- 대부분의 시국관련 학생 출신들은 수배, 구속, 수형생활로 이어지는 동안 군입대할 수 있는 적정시기를 여타의 정치적 환경에 의해 가로막힌 사람들이다. 특히 현재 나이 만 25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배, 구속 수형생활, 군복무 기간을 포함하면 4-5년간의 사회와 격리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만 25세 이상으로 시국관련 학생들이 만약 군복무를 할 경우에는 제대 나이가 최소 27세에서 최대

만 31세가 된다. 이들이 다시 학교에 복학 및 복직하여 1년에서 3년까지 대학생활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정상적 사회 진출의 기회를 잃게 된다. 이러한 근거로 인해 수형자중 만 25세 이상인 자들에게는 정상적 사회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 25세 이상이 된 사람들에게는 제 2국민역 편입을 요구한다.

- 과거정권에서도 사회 민주개혁과 올바른 과거 청산의 의미에서 시국관련 수형자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있었다. 저희들은 현 정부가 진정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라고 한다면, 시국관련 수형자들에 대한 폭넓고 대대적인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 병역법 시행령 136조에 의거하여 징역 또는 금고에 관하여 2년미만의 형 선고자(집행유예자는 제외)는 보충역 편입으로 되어있다. 또한 1년 6월을 2번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던 수형자들에 대해서는 형기합산이 적용이 되지않아 실제로 3년동안 수형생활을 하고도 다시 군대를 가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형기합산을 통해 2년이상 수형생활을 했던 자들(집행유예자 제외)에 대해 형기합산이 적용되어 제 2국민역으로 편입되어야 한다.

다. 보충역 편입 대상자와 근거

- 보충역 편입대상자는 과거정권으로부터 정치적 억압과 탄압을 받았던 시국 관련 학생들로 만 25세 미만인 자들로 설정하였다.
- 이는 군내에서 발생하는 조직사건, 군사찰, 프락치 강요등 정치적 악용을 방지하는 것이다.
- 신성한 국방의 의무와 정상적 정상적 사회진출에 기회를 보장받아 현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국민화합과 국난극복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4. 병무청의 반대근거에 대한 양군모의 입장

1) 국방부와 병무청이 제시하는 현 병역법 시행령 개정불가의 주요근거

- 첫째, 시국관련 수형자만을 위한 특례를 인정할 경우, 가장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이 오히려 특혜처분적 성격을 가짐으로서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결여되며,
둘째, 시국관련 수형사유와 병역의무 면제와 연계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공감대 형성이 곤란하고,
셋째, 귀 모임중 대부분이 집행유예자 선고자이기 때문에, 수형생활로 인한 학업지연 및 사회복귀시기 문제는 다른 학생과 별 차이가 없으며,
넷째, 귀 모임에서 요구한대로 과거청산과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관용조치로 제 2국민역 또는 보충역처분시 기입영자(일반형사범, 여러분친구들중 입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은 물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제 2국민역 또는 보충역을 처분해야 하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병역의무 자진이행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2. 국방부-병무청의 입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 1) 시국관련 양심수들의 군문제 해결은 정상적인 사회복귀 보장차원에서 80, 84, 88, 93년에 이미 4차례에 걸쳐 이루어져왔으며, 병무청의 주장은 이제까지 병역행정이 걸어온 역사적 과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국관련 양심수의 군문제 해결이 '특혜처분적 성격'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자신들의 근시안적 기준만을 가지고 바라볼 뿐 시국관련 양심수들이 처한 비정상적인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이다.
시국관련 양심수들은 대부분 수배, 구속, 수형생활로 이어지는 동안 군입대할 수 있는 적정시기를 여타의 정치적 환경에 의해 가로막힌 사람들이고, 이로 인해 정상인에 비해 대략 3-4년이 더 늦어지고 있다.
이래도 시국관련 양심수들의 군문제 해결이 특혜조치라고 볼 수 있는지 저희들은 반문하고 싶다. 우리는 단연코 우리의 군문제 해결이 '특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조건을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것이라고 본다.

- 2) 우리들은 단순히 시국관련 양심수라는 사실자체 때문에 군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첫째, 현재 군내에서는 시국관련 학생출신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침해가 기무

사에 의해 행해지고 있어 인권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 둘째 수배, 구속, 수형생활 등으로 인해 정상인에 비해 비정상적인 처지와 조건에 있음으로 인해 병역의무를 다 시 부과할 경우 정상적인 사회진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문제 해결을 제기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정서'상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지금의 국민정서는 어떠한가? 지금의 국민정서는 과거청산차원에서 개혁과 양심수 문제의 해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병역비리를 가지고 국민정서를 운운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은 병역관련자들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병역기피를 해왔는데에 분노하고 있고, 그 비리의 온상이 병무청이라는데 일정 합의를 하고 있다.

3) 병무청은 저희단체의 회원중 '대부분이 집행유예 선고자로, 수형생활로 인한 학업지연 및 사회복귀 시기 문제는 다른 학생들과 별차이가 없다'라고 하지만, 이는 시국관련 양심수들의 수형생활 기간만을 산정한 수치일 뿐 수배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생의 군입영 적정시기는 대개 대학 2-3학년때이지만, 수배 등으로 인해 군입영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짐으로 인해 일반 대학생에 비해 3-4년이 더 늦어지는 극히 비정상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 시국관련 학생들이 이러한 비정상적인 처지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병무청만이 수형생활로 인한 학업지연 및 사회복귀 시기 문제가 다른 학생들과 별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가?

4) 과거청산과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제 2국민역 및 보충역 처분시 '기입영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만, 93년 정부조치의 예처럼 기입영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전역조치를 취하면 되는 문제이다. 또한 진정으로 병무청이 과거청산과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시국관련 학생들의 제 2국민역 및 보충역 편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위와 같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병무청은 정부가 바뀔때마다 제 2국민역 또는 보충역을 처분해야 하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병역의무 자진이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지만, 시국관련 학생들의 제 2국민역 또는 보충역 처분으로 인해 병역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며, 오히려 국민의 병역의무 자진이행을 가로막은 근본적 원인은 병역행정의 불투명성과 끊임없는 병역비리 시비로 병무청의 공신력이 떨어졌다는 데에 있다.

3. 국방부 및 병무청에 대한 우리의 요구

- 1) 우리들은 국방부 및 병무청이 지난 문민독재인 김영삼 정부가 양산한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 국민의 정부가 과거 김영삼 정부와의 차

별성을 이야기하지만, 과거청산 작업, 개혁작업, 그리고 양심수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과거정부에 비해 후퇴하고 있다. 우리는 현 정부가 진정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면, 과거정부와 과거의 불합리한 정치적 환경이 양산해낸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본다.

2) 병무청은 시국관련 양심수의 군문제 해결을 단지 행정적 처리차원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정치적 차원의 해결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병무청 스스로 아무런 해결의지가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다.

3) 또한 병무청의 입장은 국민 개개인의 처지와 아픔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만 앞세우는 관료주의적 발상의 극치이다. 먼저 병무청은 시국관련 양심수들의 처하고 있는 처지와 조건에 대해 보다 진지하고 총체적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4) 현 군대는 시국관련 학생들에게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기무사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시국관련자들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통제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지난 해군사관학교 교육중이던 전택기(고려대 정경대학 통계학과 출신)씨의 구속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병무청은 4월 22일 저희들에게 보낸 회신문에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군 내에서의 탄압이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부문에 대해서는 병무청과 여당은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병 무 청

우 140-190 서울 용산구 후암동 101 /전화 (02)772-4366 /전송 772-4339 담당 : 한소열

문서번호 정병 34100 ~ 197

시행일자 '98. 4. 22.

받음 장우석외 85명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서울 용산구 갈월동 14-60호 3층

제목 탄원서 회신

1. 귀 모임에서 대통령 비서실로 제출한 탄원서가 우리청으로 이첩되어 검토한 결과를 회신합니다.

2. 탄원서 내용을 검토한 바 자신들의 수형생활로 인하여 학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군복무까지 한다면 사회에 복귀하는 시기가 늦어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으니 인도적, 국민 대화합적인 차원에서 '89년 3월 이전 수형자 처리기준으로 개정하여 군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3. 병역의무든 대한민국 남자면 누구나 예외없이 공평하게 이행해야 하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귀 모임에서 요구한 법령개정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특정집단의 제2국민역 처분을 위한 법령 개정은 법리상 수용이 곤란할 뿐 아니라 가장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할 병역의무 정신 훼손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나. 죄질이 경미한 일반 형사범까지 병역면제 처분할 경우 고의적인 병역면탈을 위한 범칙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다. 시국관련 수형사유와 병역의무면제와 연계하는 것은 국민정서 상 공감대 형성이 곤란하고,

라. 귀 모임중 대부분 집행유예 선고자이기 때문에 수형생활로 인한 학업지연 및 사회복귀시기 문제는 다른 학생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마. 시국관련 수형자 군복무시 기무사등의 조사 및 각종 조작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조작 및 탄압은 있을수 없습니다.

4. 귀 모임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병역의무는 헌법상 규정한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또한 국가존립의 기본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모임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셨다고 자부하고 계신다면 병역의무는 오히려 일반 병역의무자보다 더 솔선수범하여 자진 이행하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국민들의 병역의무에 관한 정서는 군복무에 신체상 결함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공감하고 있으니 귀 모임에서도 신성한 병역의무를 솔선하여 이행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본 회신문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병무청 징병검사과 (772-43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병 무 청



양군모 회원현황 및 징집영장 반납투쟁

: 400여명의 시국관련 양심수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1. 김영삼정부하 양심수 출신의 양군모 회원현황

2. 징집영장 반납투쟁 및 부당강제징집거부 연서투쟁

1) 징집영장 반납투쟁 : 5인 반납

영장반납자 : 권오혁 (1998. 10. 13 반납)

이재봉 (1998. 10. 22 반납)

우승희 (1998. 10. 22 반납)

추창근 (1998. 10. 22 반납)

추선우 (1998. 10. 22 반납)

< 반납이유 및 요구사항 뒷부분 설명 >

2) 부당강제 징집거부 연서투쟁 : 대표 문치웅 외 86명

1. 김영삼 정부하 양심수 출신의 「양군모」 대상자 현황

| | | 71년 이상 | 72년 | 73년 | 74년 | 75년 | 76년 | 77년 | 78년 | 79년 | 계 |
|-------------------|----------|----------------|--------------|---------------|----------------|----------------|----------------|----------------|----------------|---------------|------|
| 실형 | 1년 | | | 1 | 1 | | | | | | 2명 |
| | 1년 6월 | 3명 (70, 71) | 3 | 7 | 3 | 2 | 3 | | | | 21명 |
| 선고 | 집유 | | | | | | | | | | |
| 1년 미만 | 1년 | 1명 (71년생) | | | 2 | 2 | 2 | | 1 | 1 | 9명 |
| | 2년 | | | 1 | 1 | 2 | 3 | 3 | 3 | | 13명 |
| 1년 | 2년 | 1명 (71년생) | | 1 | 8 | 8 | 13 | 6 | 12 | 3 | 52명 |
| 1년 6월 | 2년 | 1명 (67년생) | 2 | 5 | 11 | 14 | 29 | 17 | 17 | 3 | 99명 |
| | 3년 | 1명 (69년생) | | 4 | 7 | 9 | 3 | 2 | 5 | 1 | 32명 |
| 2년 | 3년 | | | 4 | 10 | 7 | 3 | 4 | | 1 | 28명 |
| | 4년 | | | 1 | 2 | 1 | | 1 | | | 5명 |
| 2년 6월 | 3년 | | 1 | | 3 | 5 | 6 | 3 | 1 | | 18명 |
| | 4년 | | | 2 | | 3 | 2 | 1 | | | 8명 |
| 3년 | 4년 | | 2 | 2 | 1 | 1 | | | | | 6명 |
| | 5년 | | | 1 | | | | | | | 1명 |
| 형량 미확인 (나이 확인) | | 1명 | | 3 | 3 | 4 | 6 | 9 | 5 | 3 | 34명 |
| 계 | | 8명 (2.4%) | 8명 (2.4%) | 32명 (9.7%) | 52명 (15.8%) | 58명 (17.5%) | 70명 (21.5%) | 46명 (13.5%) | 44명 (13.5%) | 12명 (3.6%) | 330명 |
| 나이 및 형량 미확인 인원 | | 113명 | | | | | | | | | 443명 |

2. 징집연장 반납투쟁 및 부당강제징집 거부 연서투쟁

1) 부당징집 거부와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군정집영장 반납서

수신 : 대전 중앙병무청 청장님 귀하 참조 : 국방부

발신 :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영장반납 일자 ; 1차 반납 (1998년 10월 13일)

2차 반납 (1998년 10월 22일)

영장반납 인원 : 5 인

영장반납 이유 : 병무청은 부당강제징집 영장 발부를 즉각 중지하라!

- 민주사회단체 및 인권단체, 그리고 대학교수들의 '시국관련자들의 정상적 사회복귀보장'이 제기되면서 현 여당인 국민회의는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양심수 문제의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해결노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정책적으로 검토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양군모 회원에게 지속적으로 입영영장발부를 강제적으로 하고 있기에, 「양군모」는 이를 조직적인 강제징집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임.
- 우리의 요구는 무조건적으로 영장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최종결론이 날때까지 영장발부와 영장집행을 잠시 연기해달라는 것임.

2) 부당징집 거부와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서명

수신 : 대전 중앙병무청 청장님 귀하 참조 : 국방부

발신 :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연대서명 제출일자

; 1998년 10월 22일

연대서명 참여인원

: 「양군모」 대표 문치웅 외 86 명

부당징집 거부와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군정집영장 반납서

수신 : 대전 중앙병무청 청장님 귀하

참조 : 국방부

발신 :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 문치웅)

첨부 : 발급영장 원본

발신일 : 1998년 10월 13일

부당징집 거부와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군정집영장 반납인

성명 : 권 오 혁

형량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8개월 복역후 출소)

징집날짜 : 98년 10월 13일

관할병무청 : 대구지방 병무청

징집영장 반납일자 : 98년 10월 13일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 문치웅)

현역병 입영통지서

이재봉
이재봉
김주봉

1998/11/02 (13:00)
1998/11/02 (13:00)

1998년 09월 15일

광주·전남 지방병무(지)청장

현역병 입영자 예비지급통지서

이재봉
김주봉

1998/11/02
1998/10/2부터 1998/11/1까지

1998년 10월 22일

위의 여비를 받았습니니다.

영수인: 이재봉
통지서: 별첨
발행지: 광주·전남 지방병무(지)청장

• 계좌가입국 일부인 • 취급국 일부인

타국즉시지급청구서

502375
0004333

1998년 11월 2일

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취급국 일부인

타국즉시지급청구서

503375
0004333

1998년 11월 2일

상기금액을 영수합니다.

취급국 일부인

부당징집 거부와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군징집영장 반납서

수신 : 대전 중앙병무청 청장님 귀하

참조 : 국방부

발신 :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문치웅)

첨부 : 발급영장 원본

발신일 : 1998년 10월 22일

부당징집 거부와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군징집영장 반납인

성명 : 이재봉

형량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징집날짜 : 1998년 11월 2일

관할병무청 : 광주·전남 지방병무청

징집영장 반납일자 : 1998년 10월 22일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문치웅)

부당징집 거부와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 서명

수신 : 대전 중앙병무청 청장님 귀하
 참조 : 국방부
 발신 :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문치웅)
 첨부 : 서명용지(18매)
 발신일 : 1998년 10월 22일

부당징집 거부와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 서명인

성명 : 문치웅외84명

대상 : 93년부터 98년 2월 25일까지 시국관련 학생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문치웅)

○ 우리는 강제징집을 거부합니다 ○

1. [양심수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은 지난 김영삼 정부하의 시국관련 양심수 출신으로서, 수배생활과 수형생활 등을 강요한 특정 정치적 환경에 의한 비정상적인 생활로 인해 군입영할 수 있는 적정시기를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양군모]는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의 일환으로서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그리고 이들의 정상적 사회진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군문제 해결을 98년 4월부터 여당인 국민회의와 국방부 및 병무청 등의 관련기관에 끊임없이 제기해왔습니다.
2. 민주사회단체 및 인권단체, 그리고 대학교수들의 '시국관련자들의 정상적 사회복귀 보장'이 제기되고 양군모의 지속적인 활동의 결과로 현 여당인 국민회의는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양심수 문제의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군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9월 4일 1차 당정협의를 하였으며 현재 검토중입니다.
3. 그러나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정책적으로 검토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양군모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적인 영장발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군모]는 이러한 국방부 및 병무청의 행위가 시국관련 양심수 출신들에 대한 조직적인 강제징집의 일환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국방부 및 병무청의 강제징집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투쟁을 하고자 합니다.
4. 그 일환으로서 [양군모]는 현재 발부된 영장을 다시 반납하며, 이후 발부될 모든 징집영장도 역시 반납할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 이름 | 주소 | 서명 |
|-----|-------------------|-----|
| 김승국 | 서울 성북구 강계 2동 [주소] | 김승국 |
| 이근호 | 강원 철원군 동송읍 [주소] | 이근호 |
| 김태권 | 전남 영광군 도량면 [주소] | 김태권 |
| 윤기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 기진 |
| 차동현 | 경남 통영시 [주소] | 차동현 |
| 문치웅 | 서울 강서구 [주소] | 문치웅 |

◆ 구국명지대학교 양군모 일동

우리는 강제징집을 거부합니다.

1.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은 지난 김영삼 정부하의 시국관련 양심수 출신으로서, 수배생활과 수형생활 등을 강요한 특정 정치적 환경에 의한 비정상적인 생활로 인해 군입영할 수 있는 적정 시기를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양군모]는 과거 청산과 민주개혁의 일환으로서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그리고 이들의 정상적 사회진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군문제 해결을 98년 4월부터 여당인 국민회의와 국방부 및 병무청 등의 관련기관에 끊임없이 제기해왔습니다.
2. 민주사회단체 및 인권단체, 그리고 대학교수들의 '시국관련자들의 정상적 사회복귀 보장'이 제기되고 양군모의 지속적인 활동의 결과로 현 여당인 국민회의는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양심수 문제의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군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9월 4일 1차 당정협의를 하였으며 현재 검토중입니다.
3. 그러나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정책적으로 검토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양군모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적인 영장발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군모]는 이러한 국방부 및 병무청의 행위가 시국관련 양심수 출신들에 대한 조직적인 강제징집의 일환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국방부 및 병무청의 강제징집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투쟁을 하고자 합니다.
4. 그 일환으로서 [양군모]는 현재 발부된 영장을 다시 반납하며, 이후 발부될 모든 징집영장도 역시 반납할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 이름 | 주소 | 서명 |
|-----|--------------|-----|
| 조영두 | 전북 순창군 읍 남계리 | 조영두 |
| 주선우 | 전남 여수시 동문동 | 주선우 |
| 백경호 | 광주광역시 북구 야전동 | 백경호 |
| 조용현 |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동 | 조용현 |
| 이병영 |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동 | 이병영 |
| 정영철 |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동 | 정영철 |
| 이용섭 | " 광산구 동월리 | 이용섭 |
| 김익호 | 전남 여수시 동문동 | 김익호 |
| 오용수 | 전남 여수시 동문동 | 오용수 |
| 박민승 | 전남 여수시 동문동 | 박민승 |

우리는 강제징집을 거부합니다.

1.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은 지난 김영삼 정부 하의 시국관련 양심수 출신으로서, 수배생활과 수형생활 등을 강요한 특정 정치적 환경에 의한 비정상적인 생활로 인해 군입영할 수 있는 적정 시기를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양군모]는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의 일환으로서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그리고 이들의 정상적 사회진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군문제 해결을 98년 4월부터 여당인 국민회의와 국방부 및 병무청 등의 관련기관에 끊임없이 제기해 왔습니다.
2. 민주사회단체 및 인권단체, 그리고 대학교수님들의 '시국관련자들의 정상적 사회복귀 보장'이 제기되고 양군모의 지속적인 활동의 결과로 현 여당인 국민회의는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양심수 문제의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군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9월4일 1차 당정협의를 하였으며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3. 그러나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정책적으로 검토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양군모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적인 영장발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군모]는 이러한 국방부 및 병무청의 행위가 시국관련 양심수 출신들에 대한 조직적인 강제징집의 일환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국방부 및 병무청의 강제징집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4. 그 일환으로서 [양군모]는 현재 발부된 영장을 다시 반납하며, 이후 [양군모]회원들에게 발부될 모든 징집영장도 역시 반납할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 이름 | 주소 | 서명 |
|-----|--------------|-----|
| 이재봉 | 광주 북구 동문동 | 이재봉 |
| 임영철 | 광주 북구 세동 | 임영철 |
| 나인목 | 광주 동구 소재동 | 나인목 |
| 한상근 | 충남 논산시 회암3리 | 한상근 |
| 이광진 | 북구 동문동 | 이광진 |
| 박지선 | 전남 영암군 덕진면 | 박지선 |
| 우승희 | 전남 영암군 읍 | 우승희 |
| 김형환 | 광주광역시 북구 야전동 | 김형환 |
| 강재학 | " 북구 동문동 | 강재학 |
| 박상순 | 전남 여수시 동문동 | 박상순 |

우리는 강제징집을 거부합니다.

1. [양심수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은 지난 김영삼 정부하의 시국관련 양심수 출신으로서, 수배생활과 수형생활 등을 강요한 특정 정치적 환경에 의한 비정상적인 생활로 인해 군입영할 수 있는 적정시기를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양군모]는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의 일환으로서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그리고 이들의 정상적 사회진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군문제 해결을 98년 4월부터 여당인 국민회의와 국방부 및 병무청 등의 관련기관에 끊임없이 제기해왔습니다.
2. 민주사회단체 및 인권단체, 그리고 대학교수들의 '시국관련자들의 정상적 사회복귀 보장'이 제기되고 양군모의 지속적인 활동의 결과로 현 여당인 국민회의는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양심수 문제의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군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9월 4일 1차 당정협의를 하였으며 현재 검토중입니다.
3. 그러나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정책적으로 검토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양군모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적인 영장발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군모]는 이러한 국방부 및 병무청의 행위가 시국관련 양심수 출신들에 대한 조직적인 강제징집의 일환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국방부 및 병무청의 강제징집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투쟁을 하고자 합니다.
4. 그 일환으로서 [양군모]는 현재 발부된 영장을 다시 반납하며, 이후 발부될 모든 징집영장도 역시 반납할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 이름 | 주소 | 서명 |
|-----|-------------------------|------------|
| 이동혁 | 강원도 춘천시 후평3동 [redacted] | [redacted] |
| 정희일 | 서울시 강서구 [redacted] | [redacted] |
| 박치현 | 서울시 도봉구 창4동 [redacted] | [redacted] |
| 김아 | 경남 창원시 마산 [redacted] | [redacted] |
| 박성욱 | 서울시 강북구 [redacted] | [redacted] |
| 박정호 | 경북 구미시 [redacted] | [redacted] |
| 유석상 | 충남 서천군 [redacted] | [redacted] |
| 조성근 | 광주광역시 북구 [redacted] | [redacted] |

우리는 강제징집을 거부합니다.

1. '양심수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은 지난 김영삼 정부하의 시국관련 양심수 출신으로서, 수배생활과 수형생활 등을 강요한 특정 정치적 환경에 의한 비정상적인 생활로 인해 군입영할 수 있는 적정시기를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양군모'는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의 일환으로서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그리고 이들의 정상적 사회진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군문제 해결을 98년 4월부터 여당인 국민회의와 국방부 및 병무청 등의 관련기관에 끊임없이 제기해왔습니다.
2. 민주사회단체 및 인권단체, 그리고 대학교수들의 '시국관련자들의 정상적 사회복귀 보장'이 제기되고 양군모의 지속적인 활동의 결과로 현 여당인 국민회의는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양심수 문제의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군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9월 4일 1차 당정협의를 하였으며 현재 검토중입니다.
3. 그러나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정책적으로 검토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양군모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적인 영장발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군모'는 이러한 국방부 및 병무청의 행위가 시국관련 양심수 출신들에 대한 조직적인 강제징집의 일환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국방부 및 병무청의 강제징집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투쟁을 하고자 합니다.
4. 그 일환으로서 '양군모'는 현재 발부된 영장을 다시 반납하며, 이후 발부될 모든 징집영장도 역시 반납할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서명 |
|-----|------------|------------|
| 이승 | [redacted] | [redacted] |
| 내병리 | [redacted] | [redacted] |
| 윤해진 | [redacted] | [redacted] |
| 이권우 | [redacted] | [redacted] |
| 인정환 | [redacted] | [redacted] |
| 장진범 | [redacted] | [redacted] |
| 김영수 | [redacted] | [redacted] |

우리는 강제징집을 거부합니다.

1. 「양심수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은 지난 김영삼 정부하의 시국관련 양심수 출신으로서, 수배생활과 수형생활 등을 강요한 특정 정치적 환경에 의한 비정상적인 생활로 인해 군입영할 수 있는 적정시기를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양군모」는 과거 청산과 민주개혁의 일환으로서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그리고 이들의 정상적 사회진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군문제 해결을 98년 4월부터 여당인 국민회의와 국방부 및 병무청 등의 관련기관에 끊임없이 제기해왔습니다.
2. 민주 사회단체 및 인권단체, 그리고 대학교수들의 '시국관련자들의 정상적 사회복귀 보장'이 제기되고 양군모의 지속적인 활동의 결과로 현 여당인 국민회의는 과거 청산과 민주개혁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양심수 문제의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군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9월 4일 1차 당정협의를 하였으며 현재 검토중입니다.
3. 그러나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정책적으로 검토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양군모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적인 영장발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군모」는 이러한 국방부 및 병무청의 행위가 시국관련 양심수 출신들에 대한 조직적인 강제징집의 일환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국방부 및 병무청의 강제징집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투쟁을 하고자 합니다.
4. 그 일환으로서 「양군모」는 현재 발부된 영장을 다시 반납하며, 이후 발부될 모든 징집영장도 역시 반납할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서명 |
|-------|--------------------|---------------|
| 이 승 현 | 서울시 구리구 [redacted] | [redacted] |
| 박 현 준 | [redacted] | Park Hyun-jun |
| 이 중 일 | 서울. 마포구 [redacted] | [redacted] |
| | | |
| | | |
| | | |
| | | |
| | | |

우리는 강제징집을 거부합니다.

1. [양심수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은 지난 김영삼 정부하의 시국관련 양심수 출신으로서, 수배생활과 수형생활 등을 강요한 특정 정치적 환경에 의한 비정상적인 생활로 인해 군입영할 수 있는 적정시기를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양군모]는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의 일환으로서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그리고 이들의 정상적 사회진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군문제 해결을 98년 4월부터 여당인 국민회의와 국방부 및 병무청 등의 관련기관에 끊임없이 제기해왔습니다.
2. 민주사회단체 및 인권단체, 그리고 대학교수들의 '시국관련자들의 정상적 사회복귀 보장'이 제기되고 양군모의 지속적인 활동의 결과로 현 여당인 국민회의는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양심수 문제의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군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9월 4일 1차 당정협의를 하였으며 현재 검토중입니다.
3. 그러나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정책적으로 검토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양군모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적인 영장발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군모]는 이러한 국방부 및 병무청의 행위가 시국관련 양심수 출신들에 대한 조직적인 강제징집의 일환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국방부 및 병무청의 강제징집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투쟁을 하고자 합니다.
4. 그 일환으로서 [양군모]는 현재 발부된 영장을 다시 반납하며, 이후 발부될 모든 징집영장도 역시 반납할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서명 |
|-----|------------|--------------------------|------------|
| 홍주영 | [redacted]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5가 [redacted] | [redacted] |
| 조영권 | [redacted] | 서울 양자구 화랑동 [redacted] | [redacted] |
| 문형구 | [redacted] | 광주광역시 동구 [redacted] | 구. |
| 김광익 | [redacted] | 서울 강동구 [redacted] | [redacted] |
| | | | |
| | | | |
| | | | |
| | | | |

우리는 강제징집을 거부합니다.

1. '양심수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은 지난 김영삼 정부하의 시국관련 양심수 출신으로서, 수배생활과 수형생활 등을 강요한 특정 정치적 환경에 의한 비정상적인 생활로 인해 군입영할 수 있는 적정시기를 박탈당한 사람들입니다. '양군모'는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의 일환으로서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그리고 이들의 정상적 사회진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군문제 해결을 98년 4월부터 여당인 국민회의와 국방부 및 병무청 등의 관련기관에 끊임없이 제기해왔습니다.
2. 민주사회단체 및 인권단체, 그리고 대학교수들의 '시국관련자들의 정상적 사회복귀 보장'이 제기되고 양군모의 지속적인 활동의 결과로 현 여당인 국민회의는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양심수 문제의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군문제 해결에 대한 합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9월 4일 1차 당정협의를 하였으며 현재 검토중입니다.
3. 그러나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정책적으로 검토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양군모 대상자들에 대한 강제적인 영장발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군모'는 이러한 국방부 및 병무청의 행위가 시국관련 양심수 출신들에 대한 조직적인 강제징집의 일환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국방부 및 병무청의 강제징집에 반대하며 이에 대한 투쟁을 하고자 합니다.
4. 그 일환으로서 '양군모'는 현재 발부된 영장을 다시 반납하며, 이후 발부될 모든 징집영장도 역시 반납할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 이름 | 주소 | 서명 |
|-----|------------------------|-------------|
| 박정철 | 서울 마포구 [redacted] | [Signature] |
| 전수민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redacted] | [Signature] |
| 김상우 | 서울서 광화문구 [redacted] | [Signature] |
| | | |
| | | |
| | | |
| | | |
| | | |
| | | |

Part 3

군내 시국관련 양심수들의 인권현황 : 인권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군내

1. 김영삼정부하 군내의 시국관련 구속자 현황

- 총 149명 (95년 52명, 96년 54명, 97년 43명)
- 년간 구속자 평균 50명
- 김영삼 정부하 구속자는 약 250 명 정도로 추정됨

2. 구속자가 고발하는 인권현황

- 구속자 대부분이 군복무와 무관한 활동으로 구속됨
- 복무기간 동안 기무부대와 소대장 및 소속부대 상관에 의한 일상적인 정치사찰이 이루어짐.
- 일반적으로 시국관련 양심수들은 출소후 사면복권의 대상이 되지만, 군내의 양심수들은 '불명에 제대'라는 신분적 피해를 당하고 있음
- 가장 먼저 최소한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에서 '불명에 제대'라는 신분적 제약을 해결해야 함

3. 군복무자가 증언하는 군내의 인권현황

- 기무대와 상관에 의한 조직적인 정치사찰!

1. 김영삼정부하 군내의 시국관련 구속자 현황

1) 95년 군내내 조직사건과 구속 현황 ; 52명

| 번호 | 사건명 | 이름 | 적용법규 | 구속일 | 수감지 |
|----|----------------------|---|-------------------|------------------|----------------|
| 1 | 부산대 활동가 조직사건 | 이재호, 이충범 김수옥, 이정민 조창례, 황진수 변상천, 정희종 방상훈 (총9명) | 국가보안법 | 950212 | 사단영창 |
| | | | | 950213 | |
| | | | | 950214 | |
| | | | | 950217 | |
| 2 | 경기대 자주대오 활동가 조직사건 | 이종수 노창식 박병준, 서태형 이기성, 주재철 이용혁, 박 철 최정수 (총9명) | 국가보안법 | 950315 | 사단영창 |
| | | | | 950400 | |
| 3 | 이리 원광대 구국 자주대오 사건 | 배영석, 황충연 박정훈 김동욱 장대영 (총5명) | 국가보안법 | 950500 950800 | 사단영창 |
| 4 | 고려대 반미불패 사건 | 윤성문 이동헌 오백근 김정일 (총4명) | 국가보안법 7조1항, 5항 | 950515 | 서울 108 사단영창 |
| 5 | 빛나는 전망 사건 | 남기래 (이상 동아대) 장경국, 이일우, 임은기, 김명록 (이상 부산대) (총5명) | 국가보안법 | 950515 | 사단영창 |

| | | | | | |
|----|-------------------|--|-------|--------|--------------------------|
| 6 | 한총련 조통위 | 김기호 (부산대) | 국가보안법 | 950515 | 사단영창 |
| 7 | 성균관대 민민학련 사건 | 추경민 유민영 이경돈, 김수일 (4명) | 국가보안법 | 950516 | 장호원육군 교도소 " " 사단영창 |
| 8 | 전남대 민사련 사건 | 한문석, 김동오 (2명) | 국가보안법 | 950530 | 사단영창 |
| 9 | 노동청년회 사건 (일반) | 김학규, 이증삼 (2명) | 국가보안법 | 950704 | 용산기무사 |
| 10 | 전주 우석대 자주대오 사건 | 주성화 서윤근 구자현 (3명) | 국가보안법 | 950829 | |
| 11 | 이적 표현물 소지 | 문태식(전남대) | 국가보안법 | 951007 | 사단영창 |
| 12 | 충남대 활동가 조직사건 | 박찬희, 김용성 김영길, 이재운 제무겸, 이해찬 (6명) | 국가보안법 | 951018 | 기무사 |
| 13 | 광주대 | 노승현 | 국가보안법 | 951100 | 사단영창 |

| | | | | | |
|----|-------------------|--|-------|--------|--------------------------|
| 6 | 한총련 조통위 | 김기호 (부산대) | 국가보안법 | 950515 | 사단영창 |
| 7 | 성균관대 민민학련 사건 | 추경민 유민영 이경돈, 김수일 (4명) | 국가보안법 | 950516 | 장호원육군 교도소 " " 사단영창 |
| 8 | 전남대 민사련 사건 | 한문석, 김동오 (2명) | 국가보안법 | 950530 | 사단영창 |
| 9 | 노동청년회 사건 (일반) | 김학규, 이증삼 (2명) | 국가보안법 | 950704 | 용산기무사 |
| 10 | 전주 우석대 자주대오 사건 | 주성화 서윤근 구자현 (3명) | 국가보안법 | 950829 | |
| 11 | 이적 표현물 소지 | 문태식(전남대) | 국가보안법 | 951007 | 사단영창 |
| 12 | 충남대 활동가 조직사건 | 박찬희, 김용성 김영길, 이재운 제무겸, 이해찬 (6명) | 국가보안법 | 951018 | 기무사 |
| 13 | 광주대 | 노승현 | 국가보안법 | 951100 | 사단영창 |

2) 96년 군내내 조직사건 및 구속현황 ; 54명

| 번호 | 사건명 | 이름 | 대학 | 적용법규 | 날짜 | 수감지 |
|----|-------------|--|---------------------------------|-------|--------|-------------------|
| 1 | 전국민족민주학생연합 | 정종국, 안창현 정택상, 박종서 이동빈 (5명) |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 국가보안법 | 960131 | 기무부대 |
| 2 | 시위관련 | 박준완 (1명) | 전남대 | 국가보안법 | 960308 | 광주교도 소 |
| 3 | 사회주의학생연합 | 권호영, 신석원 이지윤, 김대인 (4명) | 고려대, 서울 산업대, 인덕 전문대 | 국가보안법 | 960328 | 서울구치 소 기무부대 |
| 4 | 활동가 조직 사건 | 서진배 (1명) | 충남대 | 국가보안법 | 960328 | 기무부대 |
| 5 | 전국학생정치연합 | 박종연, 김일영 박노현, 서정보 (4명) | 상지대 서울대 동국대 성균관대 | 국가보안법 | 960508 | " |
| 6 | 단기 학생 동맹 | 양내원, 김금호 여상수 (3명) | 전주대 | 국가보안법 | 960621 | " |
| 7 | 민족 해방군 | 박현수, 김용민 조동주, 서재성 김성희, 박형대 (6명) | 동신대 조선대 목포대 전남대 | 국가보안법 | 960626 | " |
| 8 | 21세기 진보학생연합 | 최성진, 이철원 (2명) | 중앙대 서울대 | 국가보안법 | 960706 | 서울구치 소 |
| 9 | 새오름 사건 | 이원우 (1명) | 제주대 | 국가보안법 | 960713 | 기무부대 |
| 10 | 21세기 진보학생연합 | 박성완, 류상원 김연국 (3명) | 한신대 연세대 | 국가보안법 | 960715 | " |

| | | | | | | |
|----|------------|-------------------------------------|-------------------|-------|--------|------|
| 11 | 활동가 조직 사건 | 여준성, 이문수 정재호, 김재현 (4명) | 상지대 | 국가보안법 | 960727 | 기무부대 |
| 12 | 의식화 학습 | 이병연 (1명) | 순천대 | 국가보안법 | 970731 | " |
| 13 | 한총련 출범식 | 홍종문 (1명) | 홍익대 | 집시 | 970801 | " |
| 14 | 95년총학생회장 | 현우진 (1명) | 성균관대 | 국가보안법 | 960807 | " |
| 15 | 자주대오 | 김희영, 장청호 (2명) | 부산 외국어대 | 국가보안법 | 960902 | " |
| 16 | 애국 청년 선봉대 | 홍현욱, 임태우 (2명) | 서울대 | 국가보안법 | 960910 | " |
| 17 | 활동가 조직 사건 | 김대경, 김동현 (2명) | 제주대 | 국가보안법 | 960920 | " |
| 18 | 노동자진보정당추진위 | 양준석, 정성우 (2명) | 노진추 | 국가보안법 | 961007 | 사단영창 |
| 19 | 남총련민족해방군 | 김철빈, 최용준 김규록, 이호남 문희원 (5명) | 목포대 호남대 조선대 | 국가보안법 | 961115 | 기무부대 |
| 20 | 일심 전사대 | 민영우 | 단국대 | 국가보안법 | 961100 | 기무부대 |
| 21 | 자주대오 | 조성호 | 강원대 | 국가보안법 | 961129 | 기무부대 |
| 22 | 활동가 조직 사건 | 김종길, 박동주 (2명) | 진주 경상대 | 국가보안법 | 961129 | 기무부대 |

3) 97년 군내내 조직사건 및 구속현황 ; 43명

| 번호 | 사건명 | 이름 | 대학 | 적용법규 | 날짜 | 수감지 |
|----|-------------|---|--------------------|--------|--------|------|
| 1 | 8.15 한총련 사건 | 조영준 | 부산대 | 집시, 폭력 | 970220 | 기무부대 |
| 2 | 전국 학생 연대 | 정규상, 임경구 신희영 (3명) |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 국가보안법 | 970322 | 기무부대 |
| 3 | 단기 학생 동맹 | 오광모, 송신원 (2명) | 전주대 | 국가보안법 | 970324 | 기무부대 |
| 4 | 서울대 학생 연대 | 이웅, 조영현 (2명) | 서울대 | 국가보안법 | 970424 | 기무부대 |
| 5 | 노나매기 | 이기성, 김형민 (2명) | 서울대 | 국가보안법 | 970424 | " |
| 6 | 청년 구국 선봉대 | 류도환, 이 준 권대오, 김성희 장을수, 이용남 조범석, 황재우 권영태 (9명) | 고려대 | 국가보안법 | 970612 | " |
| 7 | 주사 연구회 | 김기우, 김병준 임민혁 (3명) | 용인 외국어대 | 국가보안법 | 970626 | " |

| | | | | | | |
|----|------------|---|-------------|-------|--------|---|
| 8 | 자주 혁신 대오 | 오동국, 조진구 양진건, 최용원 이승일, 진민중 송승룡 (7명) | 전북대 | 국가보안법 | 970627 | " |
| 9 | 21세기프로메테우스 | 박수영, 이원팔 이규광 (3명) | 상지대 | 국가보안법 | 970630 | " |
| 10 | 학생 연대 | 김창희 | 성균관대 | 국가보안법 | 970721 | " |
| 11 | 통일을 여는 사람들 | 이동근, 신현태 권재우 (3명) | 인천교대 | 국가보안법 | 970725 | " |
| 12 | 95년 서총련문화국 | 김종민 | 서강대 | 국가보안법 | 970819 | " |
| 13 | 한총련 출범식 | 홍종문 | 홍익대 | 집시 | 970801 | " |
| 14 | 자주대오 | 최재성, 황승욱 (2명) | 부산 동아대 | 국가보안법 | 970911 | " |
| 15 | 자주대오 | 백승훈, 고영일 남재석 (3명) | 연세대 (원주) | 국가보안법 | 971101 | " |

2. 구속 피해자가 고발하는 군내의 인권현황

“군대내에서 우리들은 정상적인 군인이 아니라
단순한 정치사찰의 대상일 뿐이며,
우리들의 인권은 이미 쓰레기통에 버려진지 오래다.”

구속 피해사례 증언자

1. 박 상 욱 ([REDACTED])
2. 신 희 영 ([REDACTED])
3. 이 승 일 ([REDACTED])

1) 박 상 욱

주민등록번호 : [REDACTED] - [REDACTED]

소 속 부 대 : 3기갑 여단 112기갑화 보병부대 3중대 1소대

복 무 기 간 : 92. 5 - 94. 4

구 속 시 기 : 1993년 12월

주 요 사 항 :

- 20개월 정도 군복무 중에 학교후배와 함께 구속
- 입대후 1주일내 1회씩 헌병대에 소대장이 정기적으로 보고
(소대장의 말)
- 광주 상무대 헌병대 영창에서 20일 동안 구속수사
- 94년 3월 초순 군재판소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군복무기간을 대부분 마쳤지만 ‘이등병 불명예 제대’
- ‘불명예 제대’라는 사실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했고,
‘불명예 제대’라는 신분적 제약이 최소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음

2) 신 희 영

주민등록번호 : [REDACTED] - [REDACTED]

소 속 부 대 : 육군 31사단 95연대 1대대 1중대 제 1소대장 소위

복 무 기 간 : 96. 7 - 97. 8

주 요 사 항 :

- 97년 3월 22일 소위복무 8개월만에 구속
- 97년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기무사령부에서 1차조사, 같은 해 4월 19일까지 육군 31사단 헌병대 영창(광주시 오치동 소재)에서 2차 조사 받은 후 ‘9군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받음. 이에 항소하여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음.
-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입대하고, 육군 소위 복무중 구속
- ‘불명예 제대’라는 사실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했고,
‘불명예 제대’라는 신분적 제약이 최소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음

3) 이승일

주민등록번호 : [REDACTED]

소속부대 : 군산해양경찰서 경무과 타격대 근무중
해양경찰 전경 (전투경찰순경)

복무기간 : 97. 2. - 현재 복무 중

주요사항 :

- 97년 2. 17 해양경찰 전경에 지원입대

6. 25 국가보안법(고무, 찬양) 위반으로 긴급체포

6. 26 구속으로 직위해제됨 (근거 : 전투경찰대 설치법)

8. 25 보석허가로 전주교도소에서 석방됨

98년 2. 13 1심 선고유예 판결선고(부분 무죄, 부분유죄 판결)

3. 검찰의 항소와 본인 등 피고인들의 항소로 2심 진행

6. 22 복직되어 현재 근무중, 현재 2심 진행중(98. 11 선고공판 예정)

- 전투경찰 설치법에 의해 97. 6. 26 직위해제되어 98. 6. 22 까지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군복무기간에 산입되지 못함, 만약 최종재판에서 무죄판결시 군복무기간으로 산입되지만, 유죄판결시 군복무기간으로 산입되지 않고 1년의 시간을 더 근무해야 함. 그러나 이제까지 군내에서 일어난 시국관련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임.

- 97. 8. 25 보석석방 이후 군산해양경찰서에서 3차례 복직신청 했으나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복직되지 않다가 결국 98. 6. 22 복직됨

- “공무원법에서 규정한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면 직위해제가 된다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비추어보았을 때, 공무원법보다 하위법인 전투경찰설치법에 의해 직위해제된다는 것은 부당하다”(이승일씨의 주장 중)

그 일은 93년 12월 중순에 있었다. 92년 5월에 입대했으니 어느새 1년 반을 넘긴 군인생활을 한 셈이다. 내가 생활한 곳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3기갑 여단 112기계화 보병부대 3중대 1소대였다. 입대하고 1년여가 지난 어느 날, 제대를 앞둔 소대장은 나를 불러서 그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나에게 대한 생활기록을 작성해서 헌병대에 보고하고 있노라고 말했다. 그냥 형식적인 보고였다고 이야기하지만 소대장 스스로도 그 업무가 갖는 의미를 알고 있는 듯 보였다.

이제 이 겨울만 지내면 나는 다시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 다음 주에는 병장으로 진급하고 내 운신의 폭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워지는 것이다. 평소 토요일과 다르게 그 날 오전은 간단한 청소와 정신교육 시간으로 채워졌다. 다른 소대와 축구시합을 하기로 약속하고 점심식사를 하러 가던 때, 대대장 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옆자리 친한 사병에게 내 짐작을 알리고, 긴장한 사복 두 명이 나를 붙잡아 수갑을 채우고 차에 태웠다. 우선 헌병대로 가서 간단한 신분확인을 하고 다시 광주로 향했다. 광주 톨게이트 근처부터 눈가리개를 씌우더니 한참을 가다 내려서 어느 건물 지하로 데려간다. 한참동안 조용하다. 그리고 날라드는 발길질...

다시 눈을 뜬 건 - 뒤에야 알았지만 - 광주 상무대 헌병대 영창이었다. 그 날부터 나는 어떤 건물 지하 방과 상무대를 오가는 생활을 한다. 주로 세 명이 나를 조사하는 듯 했다. 책상에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서류봉치가 쌓여 있고, 거기에는 군대에서 내가 읽었던 책과 일기까지 들어있었다. 나는 학생 때 전국 민주주의 학생연맹(민학련) 활동과 학교를 나와서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사노맹) 준회원으로 활동했었다.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민학련과 사노맹의 관계와 민학련의 계보, 그리고 사노맹 회원가입서를 썼는지, 사노맹에서 활동 따위였다. 그들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과 공간을 그들이 준비한 자료에 짜 맞추려 들었다. 그들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몇 날 몇 시에 어느 곳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이적 행위로 위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도록 계속되는 질문과 대답과 구타와 진술서 쓰기를 마치면 다시 새로운 고통과 싸워야 했다. 한 겨울 영창은 담요와 모포 하나로 추위를 견디어야 하는 곳이다.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추위는 뼈 속까지 후벼놓았다. 일주일이 지났을까? 어머니와 형과 누나가 면회를 왔다. 친구들이 함께 왔는데 들여보내 주지 않는단다. 다시 며칠 뒤에 옆방에 누군가 들어와 있음을 느꼈다. 학교 후배가 나와 며칠 사이로 끌려와 조사를 받고 있었다. 내가 상무대에 잠을 자러 갈 때 후배는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방식으로 서로 길을 엇갈리게 했던 것이다. 20일 동안의 조사를 받고 나오던 날 나는 후배 얼굴을 볼 수 있었다. 초췌한 모습의 후배는 예의 천진한 웃음을 보였다.

다시 원주에 있는 1군사령부 소속 어느 부대 헌병대로 갔다. 채워졌던 수갑 때문에 굳은 몸을 뒹뒹 주먹이 날라 온다. 이 영창은 난방이 들어온단다. 밥도 많이 준다고 했다. 상무대 영창은 양동이 하나에 밥을 날라 오는데 배식 할 때면 조금이라도 많이 담긴 밥그릇을 차지하기 위해 눈치를 본다. 그러나 어느 곳이건 영창은 영창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곳은 자연광이 들어오지 않는다. 조립식 건물에 철창으로 만들어진 이 곳에서도 나는 딸랑 혼자서 큰 방 하나를 차지했다. 마치 내 살결만 닿아도 빨간 물이 들것처럼 호들갑이다.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양쪽 어금

이승일 [REDACTED]

니 두개를 뺏는데 밖에 나가 해 놓으란다. 밥이 씹히지 않는다. 영창에서는 밥을 거르거나 남기지 못한다. 영창에 있는 두 달 내내 제한 게 내려가지 않아 지금도 가슴에 통증을 느낀다. 영창은 구타와 인격적 모독이 난무한다. 그것 없이는 하루도 유지하지 못한다. 하루 종일 정좌한 채로 책을 읽거나 목상을 한다. 대화는 불가능하고 조그만 움직임도 허락하지 않는다. 화장실은 하루 세 번 정해진 시간에 갈 수 있으며, 심분 여 몸을 푸는 시간이 있을 뿐이다. 어떤 헌병은 들어와 슬리퍼를 입에 물린다. 마음에 안 들면 화장실로 끌고 가 퍽퍽 소름끼치는 소리를 들려준다.

읽는 책은 성경과 불경 그리고 국방부에서 낸 몇 권이다. 책은 손을 죽 편 상태로 읽어야 하는데 그건 차라리 최고의 고문이다.

3월 초순에 나는 다시 부대로 들어온다. 군 재판소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딱딱 밀어 올린 머리와 이등병 계급장이 어색하지만 대수로운 문제는 아니었다. 부대에서는 내가 끌려간 뒤 바로 정신교육이 있었고, 내가 평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누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는지 써내라고 했다. 부대 일지에는 나를 애초에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있었다. 총원에서 제외가 된 것이다. 사고나 그 밖의 다른 이유가 아니고, 총기도 없어졌다. 어디서 죽어 없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새로 지급된 총을 받았지만 근무나 훈련에서 제외다. 중대장은 나를 불러놓고 왜 자기 군 생활이 꼬이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나를 낱알이 관찰해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문책을 받은 눈치다. 장교들이 나를 대하는 반응은 두 갈래다. 어떤 이는 '데모 좀 했어?' 비꼬는 말을 던지고, 어떤 이는 모르는 척만 것이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뒤 이등병 말 호봉으로 제대했다. 주임상사가 한 달 더 군대 생활을 해서 일병으로 제대하라고 말했다. 불명예 제대라는 사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면서, '일병 제대'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고정관념이 불명예 제대라는 쪽으로 덜 미치기 때문이란. 도대체 하루라도 그 곳에 더 있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제대 뒤 복학한 나는 97년 겨울에 졸업했다. 졸업하기 전 교수님이 어느 중소 건설회사에 다니는 선배를 소개시켜 주셨다. 마지막 면접 때, 왜 이등병제대냐고 물었다. 그리고 연락이 없었다. 지금 나는 아는 이들과 마음을 모아 일을 하고 있다. 그나마 대외적인 업무처리는 내가 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은 사면과 복권이 되었지만, 불명예 제대는 평생을 간다고 한다. 군대에서 잘잘 못을 했을 때 그것을 군법에 적용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사회 생활을 하면서 했던 일을 군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같은 법 조항에 준해서 같은 형을 받았던 이들은 이미 사면 복권되었는데, 나는 사면 복권되지 않았다. 사면 복권되어도 불명예제대라는 딱지가 남는다. 내가 법을 뛰어넘는 힘을 갖거나, 법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생활하면 그만이지만...

사실 나는 93년 겨울에서 94년 봄까지 있었던 일에 나의 현재와 미래를 저당 잡힐 생각은 없다.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것이 대순가? 그러나 정작 내가 떼어버리고 싶은 것은 내 몸에 덕지덕지 붙은 그 때의 생채기이다. 항상 제한 듯 답답한 가슴과 시름거리는 무릎과 진저리 치며 떠오르는 기억과 불면의 밤들은 그 무엇보다 오래도록 남아 있을 듯 싶다.

43 124 [redacted]

평소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을 통해 군대 내에서 '발생한' 반민주적인 제반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난 97년 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저의 사정을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이름: 신 희 영(申禧泳)

신희영

2) 주민등록번호: [redacted]

3) 현재 직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4) 주소 및 연락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redacted]
*집 전화: [redacted] 학교(사무실) 전화: [redacted] 87
*PC 통신 "참세상" ID: [redacted]

5) 구속연월일: 1997년 3월 22일

6) 구속당시 신분: 육군 31사단 95연대 1대대 1중대 제 1소대장 소위

6) 구속 당시 혐의사실

본인은 지난 1993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전국학생연대" 산하의 "서강대학교 지부(서강대 학생연대)"를 건설하여 활동하였는데, 이 조직이 1996년 겨울 국회에서의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하는 전국민적 저항이 촉발되면서 조성되기 시작한 김영삼 정부의 '신공안 한파'에 의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그 조직의 건설과 초기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경찰당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 구속 당시 저는 현역 육군 장교로 군 복무중이었던 바, 혐의는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 단체 결성' 과 '이적 표현물 제작·반포' 및 '이적 단체 찬양·고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7) 구속 당시 수사기관과 담당관들

구속 당시 본인은 현역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 제가 알기로 - 경찰청에서 사건(관련 자료 일체)을 국군 기무사령부로 이첩하였고, 이에 따라 저는 국군 기무사령부(서울 거여동 소재)에서 "군 사법 경찰"의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97년 3월 22일부터